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-2973호
도시관리계획(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63호(2022.2.17.)로 결정(변경)된 「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」의 구역 및 계획 내용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1월 10일

서울특별시

가. 구역명 :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	강서구 방화동 612번지 일대	123,119.3	증) 412.0	123,531.3	서울시고시 제1996-195호 (1996.7.13.)	-

※ 세부 구역의 범위,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

다. 열람기간 :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

라. 열람내용

- 도시관리계획(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(안)

마. 관계도서 : 생략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바.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: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

-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 02-2133-8386, fax 02-2133-0738)

- 강서구 도시계획과(☎ 02-2600-6844)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-2974호
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 공시송달 공고
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(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)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(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)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자동차 소유주에게 『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』를 발송하였으나, 본인 외 우편수취, 수취인 불명, 주소불명, 수취거부,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2년 11월 10일

서울특별시장

1. 건 명 :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
 2. 근 거 :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윤*호 외 4,064건 <별첨참조>
 4. 공고기간 : 2022년 11월 10일 ~ 2022년 11월 24일
 5. 유의사항 :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,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됨을 알려드립니다.
- ※ 자동차번호판 영치관련 과태료 체납 내역 확인 및 납부는 자동차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(<http://youngchi.seoul.go.kr>)에서 가능합니다.
- ※ 체납된 과태료는 매월 증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.
2. 의견서(서식) 1부. 끝.